



中国上海师范大学人文与传播学院

与

韩国国民大学文科大学



学生交流项目协议书

本协议签约双方为上海师范大学人文与传播学院和国民大学文科大学。

1. 目的

本项目旨在推动上海师范大学人文与传播学院与国民大学文科大学之间的本科生交流。

2. 注解

除特殊含义外，本协议中所出现的几个关键名词是指：

2. 1. “交流”指两校间一对一的学生交流。
2. 2. “交流生”即参加本协议安排的交流活动的学生。
2. 3. “派出方学校”系学生最后毕业的大学。
2. 4. “接受方学校”系同意接待由派出方学校推荐的交流生的大学。

3. 人数及时间

在本协议自双方签名日期起执行，在有效期内，除经双方另行协商并取得一致同意外，正常情况下，上海师范大学人文与传播学院送往国民大学文科大学的学生学习时间为半年（一学期），国民大学文科大学送往上海师范大学人文与传播学院的学习时间为半年（一学期）。上海师范大学人文与传播学院与国民大学文科大学学生交流名额都为每学期(半年)不超过 4 名学生, 每年(以两学期为基准)不超过 8 名学生。上海师范大学人文与传播学院与国民大学文科大学应保持每年交流生名额对等，如有不对等的情况，派出学生少的一方可将名额可累计至

之后的学期。交流生学习期间的延期等事宜由双方协商决定。

4. 双方共同的责任

接受学生

4. 1. 双方为对方学生提供合适的语言、文化和专业课程，并帮助学生选课。必要的话，可就课程内容和结构及大纲的变动进行协商。
4. 2. 学生在对方学习期间，接受方安排学生入住留学生宿舍，宿舍费用由学生本人支付。
4. 3. 学生在对方学习期间，接受方应为他们提供适当的照顾和帮助，包括抵达学校后的入学介绍及享受与本校学生相同的福利和服务。
4. 4. 在开展本项目期间，双方将保证严格执行该校的质量保证程序，并遵守其实习质量章程。
4. 5. 期末考试后，双方需向对方提供一份学生的成绩单，并就学生学习期间的表现，提供一份正式的或非正式的报告。
4. 6. 双方需提供充分的课程介绍材料，报名表和其它相关资料，以协助对方进行宣传。

派送学生

4. 7. 双方将对本项目进行宣传，并鼓励本方学生前往接受方学习。
4. 8. 双方将协助其学生办理申请手续，包括提供学生交流申请表，派出方接收填好的申请表并转给接受方。派出方承担邮寄申请表的费用。
4. 9. 为帮助学生前往对方学校学习，派出方学校需向学生提供有关申请护照和签证的建议。

5. 学生的选拔

5. 1. 上海师范大学人文与传播学院选拔品行端正具有一定韩语基础的学生送往国民大学文科大学。
5. 2. 国民大学文科大学选拔品行端正具有一定汉语基础的学生送往上海师范

大学人文与传播学院。

5.3. 是否接受派出学生的最终决定权在接受方。双方保留拒绝申请人入学的权利。

6. 联络人员及其责任

双方各指定一名联络人员进行联系，并负责处理与本项目相关的教学事务。联络人员的名单将在开始执行本协议之日起确定。若要更改联络员，需提前通知对方。学生在接受方学校的学习内容需得到教学联络员的批准和同意，对学生在学习期间和学习期末的表现所作的评估也需得到教学联络员的批准和同意。

7. 费用和服务

7.1. 根据本协议规定，所有交流生均需在其派出方学校注册，并向派出方支付学费。

7.2. 接受方学校将免去交流生的学费。

7.3. 参加本项目学生的食宿费自理。

8. 协议的续签、终止和修改

8.1. 每年均需对本协议执行进行审查。在不对本协议进行修改的前提下，本协议的有效期为五年。对本协议的任何修改，均需以书面形式提交，经双方批准后，即为本协议的一部分。

8.2. 在得到双方的书面同意后，可续签本协议。在本协议到期之日前六个月，双方需就续签事宜进行协商。

8.3. 有异议时，任何一方在提前六个月向另一方发出书面通知后，可终止此协议。

8.4. 终止本协议后，双方需努力保证滞留的交流生能完成他们的学业。

9. 争端的解决程序

9.1. 本协议接受中国和韩国法律约束，对本协议的解释也需遵照中国及韩国的法律。

9.2. 若双方对本协议有任何异议，需尽量由双方代表协商解决。

9.3. 本协议自双方代表签字之日起生效。

10. 保管

本协议一式两份，双方各执一份。

上海师范大学人文与传播学院：

陈恒

日期：2016.6.14

院长 陈恒

国民大学文科大学：

李仁珪

日期：2016.6.14

文科大学学长 李仁珪



대한민국 국민대학교 문과대학
중화인민공화국 상해사범대학교 인문학원
학생교류 협약서



본 협약서를 체결한 양 기관은 국민대학교 문과대학(이하 "국민대 문과대학")과 상해사범대학교 인문학원(이하 "상사대 인문학원")이다.

제 1 조 (목적)

이 협약은 국민대 문과대학과 상사대 인문학원 간의 원활한 학부생 교류를 추진하고자 체결한다.

제 2 조 (용어해석)

1. "교류 (交流)"는 양 기관의 일대일(1:1) 학생 교환을 의미한다.
2. "교환학생 (交流生)"은 이 협약에 의해 교류활동에 참가한 학생을 지칭한다.
3. "보내는 대학 (派出方学校)"이란 학생이 최종 졸업하는 학교(본교)이다.
4. "방문대학 (接受方学校)"이란 본교에서 추천하여 파견한 교환학생을 받아들이기로 동의한 대학이다.

제 3 조 (인원과 기간)

본 협약서는 양 기관이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되며, 이 기간내에 상호 간 별도의 협상을 통해 일치하게 동의한 내용 외에, 정상적 상황에서 상호 교류의 인원과 기간은 다음과 같다. 국민대 문과대학에서 파견한 학생은 상사대 인문학원에서 반 년(한 학기)동안 교환학생으로 지낼 수 있으며, 상사대 인문학원에서 파견한 학생은 국민대 문과대학에서 반 년(한학기)동안 교환학생으로 지낼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 기관 간의 교류학생수는 한 학기당 4명 이내, 매년(2 학기 기준) 8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 국민대 문과대학과 상사대 인문학은 매년 교환학생 비례를 대등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만일 학생수가 같지 않을 경우 파견학생 수가 적은 기관은 학생수를 누적 계산하여 이후 학기에 추가 파견할 수 있다. 교육기간 연장에 관한 일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 4 조 (공동 책임)

[학생 접수]

1. 양 기관은 상대측 교환학생에게 언어, 문화와 전문 교과과정을 제공하고 학생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준다. 필요한 경우 과목내용과 학업계획을 상호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2. 방문학교는 교환학생에게 유학생 기숙사 배정을 보장하고, 기숙사 비용은 학생 본인이 지불한다.
3. 방문학교는 교환학생에게 적당한 보살핌과 도움을 제공해 주며, 특히 이들에게 방문학교 도착 후 입학에 관한 사항을 소개해 주고 그들이 방문학교의 본교 학생과 같은 혜택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4. 본 협약에 의거한 교류기간 동안, 양 기관은 각자의 교과 과정과 교육 질 관리를 엄격히 집행한다.
5. 기말고사 이후, 양 기관은 상대방에게 학생성적표 (成绩单) 1부를 제공해 주며 교환학생의 학습기간 평가서 1부(정식용 혹은 비정식용)를 제출해준다.
6. 양 기관은 교과 과목에 관해 소개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학생 지원서(报名表)와 기타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상대방이 홍보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학생 파견]

7. 양 기관은 본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보내는 학교는 본교 학생들이 상대방 학교에 신청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
8. 양 기관은 본 교류 프로그램 신청에 관해 학생이 접수과정에 필요한 교류신청서 등 각종 제반사항들을 도와준다. 보내는 학교는 접수한 신청서를 방문학교에 전달하고 신청서 전달에 필요한 우편비는 직접 부담한다.
9. 학생이 상대측 학교에서 원활하게 공부하는 할 수 있도록 보내는 학교는 본교 학생에게 여권과 비자신청에 대해 필요한 의견을 제공한다.

제 5 조 (학생 선발)

1. 국민대 문과대학은 품행이 단정하고 일정수준의 중국어 기초가 있는 학생을 상사대 인문학원에 보내도록 한다.
2. 상사대 인문학원은 품행이 단정하고 일정수준의 한국어 기초가 있는 학생을 국

민대 문과대학에 보내도록 한다.

3. 최종적으로 교환학생 결정 여부는 방문학교에 있으며, 양 기관은 신청인 접수 여부의 최종 결정권이 있다.

제 6 조 (연락담당자와 책임)

상호간의 원활한 연락을 위하여 양 기관은 각각 1 명의 연락담당자를 지정하여 학생교류와 교무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연락인의 명단은 본 협약 체결일에 확정하도록 한다. 만약 연락인이 바뀔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측에게 통지한다. 학생은 방문학교에서 교육받은 내용을 담당연락인에게 허가와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학생이 학습기간과 기말고사에서 받은 평가서에도 본 연락인의 허가와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 7 조 (비용과 업무)

1. 본 협약에 의거 모든 교환학생은 보내는 학교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보내는 학교에 학비를 지불한다.
2. 방문학교는 교환학생의 학비를 면제해 준다.
3. 본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의 숙식비는 학생본인이 부담한다.

제 8 조 (효력 발생과 갱신, 수정과 해지)

1. 매년 이 협약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 협약은 어느 일방이 내용 수정을 표명하지 않는 한 서명한 날로부터 5 년간 유효하며, 만약 협약 내용 수정을 표명할 경우, 먼저 서면형식으로 제출하고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본 협약의 한 부분으로 넣는다.
2. 상호 간 서면 동의를 거친 후 이 협약은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본 협약 만료 일 6 개월 이전에 양 기관은 재협약 여부를 상의하도록 한다.
3. 이 협약의 소멸을 원할 때에 6 개월 전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를 해야 하며 본 협약은 해지된다.
4. 이 협약이 해지 될 경우, 양 기관은 상호학교에 교류 중인 학생들이 끝까지 학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 9 조 (논쟁해결과정)

1. 이 협약서는 한국과 중국의 법률을 준수하며 협약의 해설 또한 양국의 법률에 따른다.
2. 협의 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대표가 협상하여 해결한다.
3. 본 협약은 협약이 체결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10 조 (보관)

이 협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李仁珪

국민대학교 문과대학

학장 李仁珪

2016년 6월 14일

陈恒

상해사범대학교 인문학원

원장 陳恒

2016년 6월 14일